

제331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4. 18 ~ 4. 22)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331회 임시회

(2016. 4. 18 ~ 4. 22)

# 목 차

## 제331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2. 회기 및 운영 .....
3. 의 사 일 정 .....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 주요 처리사례 .....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2. 201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 I .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4. 11(월)
- 집회 일자 : 2016. 4. 18(월) 14:00
- 집회 사유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4. 18. ~ 4. 22(5일간, 2016년 : 33일, 총누계 312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 (연누계 : 12 총 누계 56)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1회 임시회	8	1	1	2	1	1	2	
2016 년도	44	5	11	7	7	7	7	-
총 누 계	545	39	116	75	85	97	107	26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016. 4. 18(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명식 의원, 양용모 의원, 최인정 의원, 양성빈 의원, 김대중 의원, 백경태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2.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li> <li>3.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li> <li>4. 본회의 휴회의 건</li> </ol>	
2016. 4. 22(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2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영일 의원, 최은희 의원, 이성일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3.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li> <li>4.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5.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li>6.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li>7.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8.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9.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0.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1.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2.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13.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li> <li>14.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5.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6.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18.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li> <li>19.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0.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li>21.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li> <li>22.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23.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li> <li>2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5.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6.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7.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li> <li>28.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li> </ol>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29.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30.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자연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31.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금구중학교 매각) 32.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33.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4. 18(월)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간담회</li> <li>○ 일반의안 심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 결정의 건</li> <li>-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전라북도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li> <li>- 전라북도의회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li> <li>- 전라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li> <li>-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li> <li>- 전라북도 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li> <li>- 전라북도의회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li> </ul> </li> </ul>	
행정자치위원회	4. 19(화)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평생교육 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li>-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ul> </li> <li>○ 현지 의정활동</li> </ul>	
환경복지위원회	4. 19(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ul> </li> </ul>	
	4. 20(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안 마이산, 지오파크, 산약초타운 탐방</li> <li>-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헬기계류장 방문</li> </ul> </li> </ul>	

산업경제 위원회	4. 19(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li> <li>-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li> <li>-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li> <li>-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li> <li>-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li>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li> </ul>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4. 19(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li>-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 동의안</li>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식 참석 및 간담</li> </ul>	
교육 위원회	4. 19(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 심사</li> </ul>	
	4. 20(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이전·신축 현장</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1회 (2016. 4. 22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36	18	6	11	1	2		14		1	1	
	누 계	709	425	179	237	9	7	1	148	22	77	29	
의 회	소계	금회	14	10	4	6		2			1	1	
		누계	367	250	155	95		7	1	5		77	1
	의원	금회	14	10	4	6		2			1	1	
		누계	334	250	155	95		6		3		66	9
	위원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13	5		4	1			8				
	누 계	245	129	20	103	6			104	11		1	
교육감	금 회	9	3	2	1				6				
	누 계	97	46	4	39	3			39	11		1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331회 (2016. 4. 22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6	36	32	2		1		1	1	
	누계	709	690	579	94		12		5	19	
조 례 안	소계	금회	18	18	16	2					
		누계	425	408	326	77		2		3	17
	의회	금회	10	10	9	1					
		누계	250	235	187	45				3	15
	도지사	금회	5	5	4	1					
		누계	129	128	99	28		1			1
교육감	금회	3	3	3							
	누계	46	45	40	4		1			1	
규 칙 안	금회	2	1	1						1	
	누계	7	6	6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14	14	13			1		1		
	누계	148	146	132	5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22	22	9	11		2				
건의결의안	금회	1	1	1							
	누계	77	77	76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29	29	29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34	17	1		15					34	30	2	1	1	1	
	누 계	611	422	7		145		22	13	2	592	481	94	12	5	19	
운 영 위 원 회	금 회	3	1	2							2	2				1	
	누 계	33	25	6					2		32	30	1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4	1			2					4	4					
	누 계	117	94			21			1	1	116	100	15	1		1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 회	6	6								6	5	1				
	누 계	94	82			10			2		90	71	15	1	2	4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7	3			4					7	5	1	1			
	누 계	89	47			39			3		86	71	9	6		3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3	1			2					3	3					
	누 계	112	74			35					108	90	18			4	
교 육 위 원 회	금 회	11	5			6					12	11			1		
	누 계	142	101			39		1		1	136	115	16	2	3	6	
특 별 위 원 회	금 회																
	누 계	23						21	1	1	23	11	11	1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						1	1	2	2					
	누계	98	1			5		68	24	98	97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6	18	2			14		1	1	36	32	2	1	1	
	누계	709	425	7	1	148		22	77	29	690	579	94	12	5	19

#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31회 (2016. 4. 22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09	425	179	237	9	7	1	148		22	77	29
의 회	소 계	367	250	155	95		7	1	5		77	1
	의 원	334	250	155	95		6		3		66	9
	위 원 회	33					1	1	2		11	18
전라북도지사	245	129	20	103	6			104		11		1
전라북도교육감	97	46	4	39	3			39		11		1

##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1회 (2016. 4. 22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09	690	579	94			12		5	19	
조 례 안	소 계	425	408	326	77			2		3	17
	의 회	250	235	187	45					3	15
	도 지 사	129	128	99	28			1			1
	교 육 감	46	45	40	4			1			1
규 칙 안	7	6	6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48	146	132	5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2	22	9	11			2				
건 의 결 의 안	77	77	76	1							
기 타 의 안	29	29	29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와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목적, 선정분야 등이 중복됨  
-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운영(' 15.10.12.)
- ' 12년 이후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신규신청 업체 및 현재 공동상표 등록업체도 없음
- 현재 공동상표의 ‘최고명품’ 용어사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1항)」에 위배
- 자치입법 정비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임.

주요내용

- 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 처분(국가 문화재청)
- 나.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 다.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 라. 전북어린이회관 철거 및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 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지정을 통해 국정과제(국가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전라북도와 시·군, 기관간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을 통한 도민 평생 학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년 5월(2016. 8. ~ 2018. 12.)
- 나. 조 직 : 6명 (겸직 포함,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등)
- 다. 소요예산 : 200백만원
- 라. 위탁업무(조례상 진흥원의 주요업무)
  - 도민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종사자 연수
  -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 마. 모집방법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바. 대 상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

###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타 시도 대비 저조한 관광객 수 및 도내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이 필요
- 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패스권 발매 및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보에 따른 수수료를 협상, 홍보 등의 영업마케팅,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가맹점 발굴·관리, 14개 시군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6. 7 ~ 2018. 12월(2년 6개월)

나. 위탁업무

- 전북관광패스권 발매 : 약 4종(한옥마을, 1·2·3일권, 수요자 맞춤형 등)
- 대중교통, 관광시설, 주차장 서비스 제공 및 정산
- 관광시설·주차장·특별할인(맛집·숙박 등) 가맹점 발굴·관리
-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보·관리, 매체별 마케팅 홍보 추진 등
- 14개 시군 연계 코스 등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 총 사업예산 : 1,784백만원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용이 불가 하여 노인보행기 지원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함

□ 주요내용

- 가. 노인보행기 지원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가 제한되어 생년월일로 정정(안 별지서식)

###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대상시설 중 노인휴양소를 삭제

주요내용

- 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대상시설중 노인휴양소 삭제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중 노인휴양소 삭제
- 나.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5.12.31일 환경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국가기준」 과 통일화하고,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발령기준과 해제기준」 을 간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을 간소화 시키고자 함(제7조제1항, 별표2)

###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2016년 4월 19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할 예정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6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개요

-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자산 : 2억원
- 설립시기 : ' 15. 12. 28 등기(' 16. 4. 19 출범)
- 사무공간 : 전라북도예술회관
- 조직규모 : 1처 1부 1단 5팀(정/현원 42/24명)
- 주요기능 : 문화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 추진

나.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승계계획

- 법적근거 :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항
- 승 계 액 : 28,227백만원(' 16. 6월말 기금액)
- 승계시기 : ' 16. 7월
- 승계내용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금으로 조성

##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교육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 강화로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 조직의 권한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북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규정
-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외부위원 공개모집 등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설(법률 제13292호. 2015.5.18.)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7조 ~ 안 8조)
- 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202호, 제2016.1.4., 일부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1관서(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부조정함으로써
- 제1관서의 업무경감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1관서의 장이 취득·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 조정(조례 제4조제1항 제1호가목 삭제)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나목에 삽입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주 00부대 이전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 사업으로 총 13,157세대 약 2,833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 동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이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됨에 따라 금번 1-1단계 개발에 따른 4,521세대 약 1,097명의 학생배치를 위해개발지구 내 초3부지에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m <sup>2</sup> )		취득예정가액	취득사유
			토지	건물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 일원	학교용지/교사	13,003 (무상)	14,445	26,993,697	‘가칭’ 솔내초 신축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군산 미장개발지구 내 4,079세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지구 내 위치한 미장초가 교실증축을 통해 48학급으로 운영 되더라도 과밀학급 해소가 어렵고, 2018년 이후에는 6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운영이 예상되며
- 인근 수송2개발지구에 위치한 군산아리울초 또한 현재 44학급으로 과밀학급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m <sup>2</sup> )		취득예정가액		취득사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신축	군산시 수송동 885-2	학교용지/교사	11,000	11,926	5,500,000	22,518,680	‘가칭’ 군산산들초 신축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삼례중과 삼례여자중학교는 모두 삼례읍의 생활 중심권에서 다소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인근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환경민원이 잦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어,
-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노후화된 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삼례중과 삼례여중을 통합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이전 신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취득예정가액		취득사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신축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1-6 일원	학교용지 /교사	27,261	7,901	2,543,784	22,364,497	삼례중· 삼례여중 통합이전 신축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본교는 2017.3. 마이스터고 개교 예정으로 현재의 실습동은 건물내구연한이 약 40년(1977년 건축)이 된 노후화된 건물로써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미생물배양 및 세포배양, 분석화학 분야의 정밀 실습을 위한 실습실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 식품가공과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실험실습실을 현재의 실습동과 별도의 장소에 증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김제자영고 식품가공과 실험 실습동 증축 (단위 : 천원)

계 획 구분	소 재 지	용도	면적(m <sup>2</sup> )	취득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김제시 신평동 499-1	사무소	1,377	2,174,644	2017.3 마이스터고개교에 따른 실험실습실 증축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금구중학교 매각)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구) 금구중학교는 2005년 폐교 이후 교육목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발생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자체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에 있는바,
- 관리상의 문제, 시설노후화 진행, 매년 폐교관리 비용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목적으로써의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금구중학교 매각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m <sup>2</sup> )	처분예정가액	처분사유
처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284	토지	18,247.00	996,286	매각
		건물	2,340.24	229,339	매각
		입목죽	10	2,330	매각
합계				1,227,955	

##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2016.03.22.)에 따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발행 계획하고 의회 의결을 얻은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변경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방교육채 감소분 보전 및 2016년도 학교신설비 확보를 위해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은 총 3건 145,881백만원으로서 당초 발행 계획한 133,171백만원 보다 12,710백만원 증가함

(단위: 백만원)

당 초(A)		변 경(B)		증 감 (B-A)	차입선	상환방법	
사업명	금 액	사업명	금 액				
학교신설	42,083	학교신설	45,436	3,353	금융채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91,088	교육환경개선	77,609	△13,479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교부금 보전	학교신설	9,357	9,357		금융채
			교육환경개선	13,479	13,479		
			소 계	22,836	22,836		
합 계	133,171		145,881	12,710			

의안번호 691

###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 : 600백만원(<국비>600, 도비 600)

의안번호 69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350백만원(<국비>7,000, 도비350)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 출연 : 1,658백만원(도비)
- 나.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출연 : 1,842백만원(도비)

###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비 출연 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산업진흥사업) : 2,018백만원(도비)
- 나.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 100백만원(도비)
- 다.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 : 100백만원(도비)

##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 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조부터 안 제9조)
- 마.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정호윤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악취방지에 관한 도시군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의 정도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 라.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규정(안 제5조)
- 마. 시장·군수가 산단내 사업장과 악취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 필요시 기술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아. 산업단지발전협의회 운영과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해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자.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지원, 악취저감제 보조금지원, 악취관리 컨설팅, 축사청결유지, 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및 민원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근거를 규정(안 제11조 ~ 안 제17조)

###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해당 실국장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명칭 수정(안 제3조)
- 나. 심의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3조제3항)
- 다. 심의회 간사를 실무부서의 팀장으로 수정(안 제7조)

###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송성환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정비
-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

□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항)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조병서정호영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조항 정비
-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조항 정비  
(안 제6조제1항)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노인복지증진 관련 각종 계획과 실태조사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주요내용

-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함(안 제8조, 제11조).
- 나.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 ----- -----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다.</p> <p>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같음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같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다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같음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같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 ----- ----- ------. 다만,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성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조례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관련 사항 수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정 및 삭제조항과 관련된 별표·별지 서식 삭제

□ 주요내용

가. 별지 제5호서식 「공사설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나. 상위법령(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정

해당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	제17조제2항제1호3	제17조제4항
제20조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다. 본문 삭제 조항 관련 서식(별표 2, 별표 3,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최인정·정진세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행정정보공개의 날에 대해 정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함에 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한다는 목적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정보공개の日을 지정하여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신설함(안 제6조)
- 다.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시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제3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라.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포함한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자 신설함(안 제9조)
- 마.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신설함(안 제10조)

##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증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제2조)
- 나.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다.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제5조)
- 마.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 (제6조)

##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폐지된 조문을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조” 다음 나오는 “규정”은 생략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꿈(안 제1조)
- 나.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했으며, “관하여”는 생략하고, “의하여”는 “따라”로 고침(안 제2조)
- 다.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에 한한다”를 “~에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꿈(안 제6조)
- 라.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자는”은 “사람”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고침(안 제9조)
- 마. 사전에 약칭이 없어서 불명확한 “조례”를 “「전라북도 여비 조례」” 바꾸고,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기준”과 허위진술한 증인 등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3)

###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4.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4. 11
	의 결 일 자	2016. 4.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의원신분증의 전자장치는 활용도가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 신분증 및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종전에 전라북도 청사 출입용으로 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신분증에 전자장치 부착을 삭제함(안 제3조)
  - 전자장치된 신분증이 전라북도 청사 출입시스템에 활용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은 무의미함(공무원 청사출입 시 손혈관 체크)
-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의안번호 708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16. 4. 1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 선임

(상임위별 가나다순)

추천의원			비고
소속위원회		성명	
연번	계	2명	
1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전주 제2선거구
2	행정자치위원회	최영규	익산 제4선거구

##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4.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4.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4. 2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9개기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한번 발생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에서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함 상황에 있음
-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비율이 여타 공공시설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지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사안으로 이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관한 국가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시급하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 나. 우리나라 또한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비율이 매우 낮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다.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건물과 공공시설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내진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전라북도의회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이야 말로 이 사회의 미래이며 지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이야 말로 지진에 대비하는 최적기임을 인지하고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4. 22)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65	65	0	100	
	누 계		149	149	0	100	
도	금 회		53	53	0	100	
	누 계		125	125	0	100	
교육청	금 회		12	12	0	100	
	누 계		24	24	0	100	

###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4. 22)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65		9	10	1	17	28	
	누 계		149	29	19	8	37	56	28	
도	금 회		53		9	9	1	17	17	
	누 계		125		27	17	8	36	37	
교육청	금 회		12			1			11	
	누 계		24		2	2	0	1	19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4. 22)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382	1,382		
전라북도	1,024	1,024		
교 육 청	358	358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4. 22)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382		349	167	139	262	453	12
전라북도	1,024		317	155	128	243	177	4
교 육 청	358		32	12	11	19	276	8

###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4. 22)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4,858		1,490	472	652	746	1,340	158
전라북도	4,012		1,404	447	618	673	811	59
교 육 청	846		86	25	34	73	529	99